

안양시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정	2000. 3. 2.	조례	제1680호
개정	2000. 7. 18.	조례	제1697호
일부개정	2005. 5. 10.	조례	제1918호
일부개정	2005. 8. 1.	조례	제1946호
전부개정	2006. 10. 17.	조례	제2019호
일부개정	2008. 5. 9.	조례	제2093호
일부개정	2009. 1. 6.	조례	제2129호
일부개정	2015. 4. 24.	조례	제2609호
일부개정	2016. 11. 10.	조례	제2765호
일부개정	2017. 3. 6.	조례	제2799호
일부개정	2021. 12. 30.	조례	제3399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3조·제54조·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양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회기와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12. 30.>

제2조(회기) ① 의회는 매년 2회 정례회를 개최한다. 정례회의 회기는 합하여 50일 이내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본회의 의결로 이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30.>

② 의장은 시장이나 재적의원의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 때 임시회의 회기는 15일 이내에서 본회의 의결로 정한다. <개정 2015. 4. 24., 2021. 12. 30.>

③ 삭제 <2021. 12. 30.>

제3조(회의 일수) 의회의 연간 회의총일수는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를 합산하여 100일 이내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연간 회의총일수를 초과하여 집회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본회의 의결로 20일 이내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5. 4. 24.>

제4조(의안의 제출·발의)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시장이나 위원회 또는 의원이 제출하거나 발의한다. 다만, 의원은 재적의원 5분의 1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

[전문개정 2021. 12. 30.]

제5조(정례회의 운영 등) ① 정례회의 집회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그 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관공서의 그 다음 정상근무일에 집회한다.

안양시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1.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10일에 집회한다. 다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에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 9월 또는 10월 중에 따로 정할 수 있다.

2.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20일에 집회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례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안건을 심의한다.

1. 제1차 정례회는 결산 승인 및 그 밖에 의회의 회의에 부치는 안건

2. 제2차 정례회는 예산안의 의결 및 그 밖에 의회의 회의에 부치는 안건

[전문개정 2021. 12. 30.]

제6조(임시회의 운영 등) 임시회에서는 발의·제출된 안건을 처리하고 시민의 의견수렴, 현장 방문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 12. 30.]

제7조(의회운영 기본일정) 의장은 의회의 연간 총회의일수 운영을 위하여 의회 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매년 1월 15일까지 당해연도의 의회운영 기본일정을 정하고 이를 전체 의원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종전 제6조에서 이동 2021. 12. 30.]

제8조(준용 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의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안양시의회 회의규칙」을 준용한다.

[종전 제7조에서 이동 2021. 12. 30.]

부칙 <2006. 10. 17. 조례 제2019호 전부개정>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6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경과조치) 2006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의회가 개최한 회의일수는 이 조례에 의한 연간 총 회의일수의 범위 안에서 사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8. 5. 9. 조례 제209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 1. 6. 조례 제2129호>

이 조례는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4. 24. 조례 제260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 11. 10. 조례 제27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 3. 6. 조례 제279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 12. 30. 조례 제3399호>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